

의안번호	2220235
의 퇴 인	박민규의원
회 답 일	2026. 9. 9.
추계번호	26C023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 고
1	안 제3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함 1.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배우자가 있는 경우: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현행)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	의무규정
2	안 제5조 (기초연금액의 산정)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기초연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국민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감액은 폐지함 $\text{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frac{\text{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10\text{만원}}{\text{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times \text{소득인정액}$ ※(현행)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5조 (기초연금액의 산정)	

2. 상세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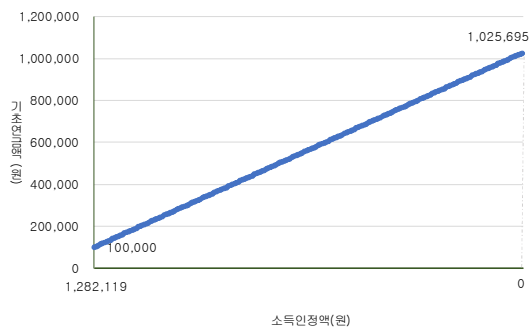
- 개정안에 따라 기초연금의 대상자 범위를 변경할 경우 기초연금의 수급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급액 단가를 동시에 변경할 경우 개정안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2026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구 내 1인 수급)의 경우 247만원으로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3%, 부부가구(가구 내 2인 수급)의 경우 395.2만원으로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4.1% 수준이므로, 개정안 시행 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을 1인가구 및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로 대상자를 변경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서 규정한 산식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 단가를 변경할 경우, 현행 수급자 중 일부는 급여가 증가하는 반면, 일부는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됨
 -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중위소득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단독가구의 경우 최소 월 10만원에서 최대 월 102.6만원까지 수급 가능하며, 부부가구의 경우 일부는 대상자에서 탈락하고, 최소 월 1원에서 최대 월 82.1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표 2] 기초연금의 2026년 기준 유지 시 개정안에 따른 예상 수급액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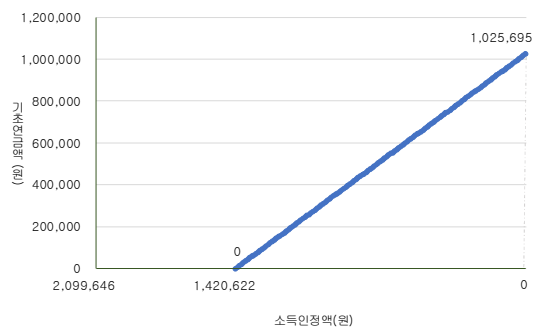
구 분		기초연금 예상 수급액	
단독가구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1,282,119원 이하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2,564,238원)의 50% 이하	
	기초연금액	$ \begin{array}{c} \text{1인 가구} \\ \text{기준 중위소득의} \\ \text{100분의 40에} \\ \text{해당하는 금액} \end{array} - \frac{ \begin{array}{c} \text{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 \text{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 10만원 \end{array} }{ \begin{array}{c} \text{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 \text{100분의 50에 해당하는} \\ \text{금액} } \times \text{소득인정액} $	
	지급예상액	$ \begin{array}{c} 1,025,695.2\text{원} \\ - \frac{925,695.2\text{원}}{1,282,119.0\text{원}} \times \text{소득인정액} \end{array} $	
		(최대)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월 1,025,695원 (최소) 소득인정액이 1,282,119원인 경우: 월 10만원	

구 분		기초연금 예상 수급액
부부가구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2,099,646원 이하 ※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4,199,292원)의 50% 이하
	기초연금액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frac{10만원}{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times 소득인정액$ $1,025,695.2원 - \frac{925,695.2원}{1,282,119.0원} \times 소득인정액$
	지급예상액	(최대)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월 820,556원(부부감액 20% 적용) (최소) 소득인정액이 1,420,621원인 경우: 월 1원 미만 (수급 탈락) 소득인정액이 1,420,621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독가구]



[부부가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급여가 증가할 대상자의 수와 급여 단가, 급여가 감소할 대상자의 수와 급여 단가, 수급에서 탈락할 사람의 수 등을 추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 및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nabo.go.kr